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공무직근로자 채용 재공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직종	인원	담당업무	근무 기간
연구원 가급 (발굴)	공무직* ※ 정년 만 60세	2	○ 수중문화재 탐사·발굴조사 업무 ○ 수중문화재 조사 자료 정리	-
합계 2명				

* 공무직: 3개월간 실무수습 후 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 여부 결정

가. 근무예정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연령: 만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자료(사본) 필수 제출)

구분		응시자격 관련 학위, 경력, 자격증
공무직	연구원 가급 (발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사학과, 고고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등 문화재 관련 계통

다. 우대사항 ※ 지원자격 이외의 학위, 경력, 자격증만 해당(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구분	응시자격 관련 학위, 경력, 자격증
연구원 가급 (발굴)	○ 관련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발굴조사 관련 업무 근무경력(근무 연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관련 자격증 : 역사, (수중)발굴조사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상담센터(1577-0606)로 본인이 사전확인

3. 근무기간

- 공무직근로자 :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채용
-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4.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 : 09:00 ~ 18:00,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 수(1호봉 세전 기준)

채용예정분야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구원 가급 (발급)	1,853,460*	140,000원

※ 상여금: 명절휴가비(연2회 설, 추석 각 500,000원 지급)

- 기 타 급 여 :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 명절휴가비 : 연2회 설, 추석 각 50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022.9.28.(수)~10.12.(수)	방문접수(09:00~18:00) 또는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10.14.(금) 예정	문화재청 및 해양연구소 홈페이지 채용게시판 게시
면접심사	2022.10.17.(월)~10.20.(목) 예정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0.21.(금)	문화재청 및 해양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시간: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겹봉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접 수 처: (32132)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소정양식)

마. 우대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해당자)

- * 우대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사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관련 업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예시) 4년 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4년 × (20시간/40시간) = 최종 2년으로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초 공고일 기준

9. 재공고 사항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력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연구원 가급(발굴) : 양기홍 학예연구사 (☎ 041-419-7042)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붙임서식 1, 2)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3)
-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안내서 1부(붙임서식 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붙임서식 5)

[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 작성목록(총괄표)

※ 아래 목록 번호순으로 집계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2. 응시원서(필수) * 서식 1호	
3. 이력서(필수) * 서식 2호	
4. 자기소개서(필수) * 서식 3호	
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서식 4호	
6.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붙임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 접수 번호			응시분야		사진부착 불요함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연락처	(집)전화 : ()		휴대폰 :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시표 < 공무원직근로자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시 번호			응시분야		
2022년 월 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관인생략)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
2. 성 명 :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분량은 최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씨크기 12, 줄간격 160mm, 용지 좌우 20mm, 상 15mm, 하 12mm,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2mm로 작성(본 양식 그대로 사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문화재청은 공무원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희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붙임서식-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